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491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5464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49177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최준영, 박아현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변론 종결 2022. 6. 8.

판결 선고 2022. 7. 6.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5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연구개발업, 플라스틱화합물 제조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10. 5.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는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관련자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은 합성수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7. 19. 설립된 회사이고, G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4. 1. 설립된 회사이다. F의 유일한 사내이사 H과 G의 관리인 I1)은 형제지간이다.

나. F의 어음 발행 등

1) F 등이 발행하여 G 등을 거쳐 피고 B에게 전달된 어음 F은 2018. 7. 31.부터 2019. 12. 19.까지 G, J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별지 2 정리표의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21 기재 각 어음(이하 '순번 ○ 어음'으로 약칭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각 어음은 G 등의 배서를 거쳐 피고 B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또한, K은 2018. 11. 15. G를 수취인으로 하여 순번 11, 12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각 어음은 G의 배서에 의하여 피고 B에게 양도되었다.

2) F이 피고 B에게 발행하여 지급이 완료된 어음 F은 2019. 7. 25.부터 2020. 3. 31.까지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순번 22 내지 51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별지 2 정리표에 나타나 있는 위 각 어음의 어음금액 합계 1,491,858,020원은 만기에 지급이 완료되었다.

3) F이 피고 B에게 발행하여 지급이 거절된 어음 F은 2020. 3. 6.부터 2020. 7. 21.까지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순번 52 내지 81 각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순번 52 어음이 만기인 2020. 8. 4.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음들도 각각의 만기에 순차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한편, F은 2019. 12. 9.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차용증

차용금액: 금 육억이천구백이십만(₩629,200,000)

1. 상기 금액을 피고 B가 F로부터 각 어음 만기일 기준 차용(전자어음 또는 현금)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변제기 및 방법

1) 원금은 지정 일자에 F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계좌번호 1

은행

L은행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F

2) 본건 대여금은 각 어음 만기일 15일 후까지 변제하기로 함

4) 어음할인 및 배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피고 B가 부담하며, 어음 만기일까지 송금이 안 될 시 만기일 기준 법정이자(연 24%) 수수료를 피고 B가 부담한다.

라. 원고의 대여금채권 양수

1) F은 2020.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8. 7. 피고 B에게 내용증명(갑 제5호증)을 보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20. 8. 11. 피고 B에게 내용증명(갑 제7호증)을 보내 양수금 629,200,000원을 2020. 8. 25.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1) 피고 B는 2020. 8. 1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나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은 피고 C이 피고 B의 M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40,000,000원은 기존 대여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2020. 8.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50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F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순번 22 내지 32 각 어음을 유통어음으로 발행함으로써 피고 B에게 그 어음금액 합계 737,612,000원을

대여하였다. F은 피고 B로부터 순번 22 어음과 관련한 어음금액 상당 차용금 129,976,000원 중 108,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순번 23 내지 32 각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12. 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그 차용금액 629,200,000원은 아래 표(별지 2 정리표를 발췌한 것이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9. 12. 9.까지의 미변제금 629,612,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2).

22	N	-	129,976,000	2019-07-25	2019-11-02	21,976,000
23	O	-	62,656,000	2019-08-02	2020-01-02	62,656,000
24	P	1	19,500,000	2019-09-06	2020-01-25	19,500,000
25	Q	2	66,000,000	2019-09-06	2020-01-25	66,000,000
26	R	3	60,000,000	2019-09-06	2020-01-25	60,000,000
27	S	-	52,000,000	2019-09-23	2020-02-22	52,000,000
28	T	1	10,000,000	2019-09-30	2020-02-26	10,000,000
29	U	2	110,000,000	2019-09-30	2020-02-26	110,000,000
30	V	-	55,000,000	2019-11-04	2020-04-04	55,000,000
31	W	-	52,800,000	2019-11-11	2020-03-31	52,800,000
32	X	-	119,680,000	2019-11-29	2020-04-28	119,680,000
합계	737,612,000			629,612,000		

나) 피고 B는 순번 22 내지 32 각 어음의 만기일 무렵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F에게 기존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의 발행을 요청하여 그 할인금 일부를 F에 전달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 B는 새로운 어음이 발행된 이후 F에 차용금을 변제한 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는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양수금 62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주장 가) F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까지 순번 16 내지 19, 23 내지 29, 31, 32 각 기재와 같이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직접 어음을 발행하거나 G, J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 B에게 배서·양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융통어음을 교부하여 왔다. F은 피고 B가 위 각 어음의 만기 이후에 차용금 지급을 연체할 것에 대비하여 연 24% 비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목적으로 2019. 12. 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그 차용금액 629,200,000원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어음내역, 차용금은 아래 표(별지 2 정리표를 발췌한 것이다)에서 보는 바와 같다.

16	Y	2	55,600,000	2019-07-16	2019-07-16	2019-12-13
17	Z	3	114,400,000	2019-07-16	2019-07-16	2019-12-13
18	AA	-	141,460,000	2019-07-30	2019-07-30	2019-12-30
19	AB	-	108,511,754	2019-08-13	2019-08-13	2020-01-13
23	AC	-	62,656,000	2019-08-02	-	2020-01-02
24	AD	1	19,500,000	2019-09-06	-	2020-01-25
25	AE	2	66,000,000	2019-09-06	-	2020-01-25
26	AF	3	60,000,000	2019-09-06	-	2020-01-25
27	AG	-	52,000,000	2019-09-23	-	2020-02-22
28	AH	1	10,000,000	2019-09-30	-	2020-02-26
29	AI	2	110,000,000	2019-09-30	-	2020-02-26
31	AJ	-	52,800,000	2019-11-11	-	2020-03-31
32	AK	-	119,680,000	2019-11-29	-	2020-04-28
합계	972,607,754					

나) 그런데 피고 B는 순번 16 내지 19, 23 내지 29, 31, 32 각 어음의 만기일 무렵까지 F의 계좌 또는 F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채권은 원고가 F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기 전에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F로부터 기존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받아 그 할인금으로 어음금액 상당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어음과 새로운 어음은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어음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작성일인 2019. 12. 9. 이전에 발행된 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어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는 위

할인금 지급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3).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유통어음은 유통자와 피유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유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유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유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유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유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유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513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F이 발행한 별지 2 정리표 기재 각 어음이 유통어음이고, 그 이면에 어음금액 상당을 대여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F이 2019. 12. 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으면서 그 차용금액을 629,2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F이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62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72, 75호증, 을가 제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L,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F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 629,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629,200,000원) 책정 경위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차용금액을 629,200,000원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과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는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을 전제로 차용 및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변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용증이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과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 중 어느 어음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9. 12. 9. 기준 미변제금이

629,612,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 629,200,000원에 상당히 근접하는 액수이다. 반면에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상 어음금액 합계 972,607,754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 629,2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그 액수만 놓고 보더라도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피고 B는 위 차용금액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F이 피고 B에게 실제로는 972,607,754원을 대여하면서도 이를 629,2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하였다고 여길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에는 F이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뿐만 아니라 G 등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피고 B에게 배서·양도된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F이 피고 B에게 직접 발행한 어음의 경우에는 F과 피고 B 사이에 유통어음 발행의 배경이 되는 소비대차계약 등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나, F이 G, J 등에 발행한 어음의 경우에는 F이 피고 B에게 직접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것이 아니므로, F이 G, J에 어음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⁴⁾ F과 피고 B 사이에도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해당 어음이 발행 당일 또는 그 직후 G, J 등을 거쳐 피고 B에게 곧바로 배서·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F이 피고 B에게 그 어음금액 상당을 빌려주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라) F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9. 12. 9. 이전에 발행한 어음으로서 위 작성일 당시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전부 나열하면 아래 표 3(별지 2 정리표를 발췌한 것이다)⁵⁾ 과 같다. 표 1 내지 3을 비교하여 볼 경우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은 순번 16 내지 19, 23 내지 29, 31, 32 각 어음은 포함하면서도 그 사이에 발행된 순번 20, 21, 30 각 어음이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은 순번 23 내지 32 각 어음이 연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일관성이 있다. F이 기존에 발행한 유통어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과 같이 일부 어음만을 선별하여 차용금액을 정하였다는 것보다는,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과 같이 피고 B에게 직접 발행한 어음 중 미변제 상태에 있는 어음을

일괄하여 차용금액을 정하였다고 보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다.

G 등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피고 B에게 배서·양도된 어음	
	16
	17
	18
	19
	20
	21
	소계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소계
	합계

마)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서는 '각 어음 만기일 기준 차용하였으며', '각 어음 만기일 15일 후까지 변제하기로 함'과 같이 '각 어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각 어음'의 범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만 포함되고 이미 만기가 도래한 어음은 제외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순번 22 어음과 같이 위 작성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경우에도 일부 차용금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는 때에는 차용금액 629,200,000원에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순번 22 어음의 만기는 2019. 11. 2.인데, 피고 B는 2019. 10. 22. H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C은 2019. 11. 4. 및 2019. 11. 21. F의 계좌로 합계 68,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08,000,000원이 F 측에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F이 피고 B로부터 순번 22 어음의 어음금액 129,976,000원 중 108,000,000원을 변제받아 미변제금 21,976,000원이 이 사건 차용증에 포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표 2 피고 B가 주장하는 어음내역'보다는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F이 G, J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피고 B에게 배서·양도된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2) 기존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한 경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F은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 중 일부 어음의 만기 무렵에 피고 B로부터 그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기존 어음과 비슷한 금액의 새로운 어음을 다시 발행하였다(상세내역은 후술한다). 이에 따라 F이 피고 B로부터 기존 어음과 관련한 차용금채무를 변제받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금은 기존 어음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F이 기존 어음에 상응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어음금액 상당 차용금채무가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F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과 마찬가지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F은 피고 B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구두 또는 묵시적 소비대차계약을 맺어오다가 2019. 12. 9.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을 통합하면서도6) 그 차용금액만 총액의 형태로 명시하였을 뿐 개별 어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F이 피고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어음의 만기 무렵까지 어음금액 상당을 확보하여 부도를 막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F로서는 피고 B에게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만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는 한편 그 할인금으로 기존 어음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새로운 어음 발행으로 인한 차용금채무 역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3) AL, BD, H의 증언 등 가) 2019. 9.경부터 2020. 8.경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한 AL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는 전액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을가 제30호증)를 작성·제출한 다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차용금채무는 2020. 6.경 또는 7.경 10,000,000원, 20,000,000원가량이 남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21면), 2018. 8.경부터 2020. 3.경까지 F 직원으로서 채권추심 등 업무를 담당한 BD 역시 '피고 B는 어음금액 상당 차용금을 F 측에 환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변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가 제29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반면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 어음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그 할인금으로 기존 어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3면).

나) H은 피고 B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거나 F의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7), F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와 달리 AL, BD은 H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나 관련 어음거래의 일부분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의 변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 별다른 신빙성이 없다. F이 피고 B에게 기존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 실질적인 변제기 연장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AL, BD은 이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가 전부 변제된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B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에 관한 개별 판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액 629,200,000원은 '표 1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내역'을 기초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②

F이 G, J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피고 B에게 배서·양도된 어음은 위 차용금액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F이 기존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피고 B가 그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전제 하에서 피고 B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16	55,600,000	2019-12-13	피고 B는 2019. 12. 5. BE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에게 BF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금액 19,470,407원, 배서금액 19,470,407원)을 교부하여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6,129,593원(= 55,600,000원 - 30,000,000원 - 19,470,407원)에 불과하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6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순번 16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114,400,000	2019-12-13	피고 B는 2019. 12. 13. BE의 계좌로 64,400,000원, BG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그 전액을 변제하였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7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 등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순번 17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 등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18	141,460,000	2019-12-30	피고 B는 2019. 12. 30. BE의 계좌로 70,000,000원, BG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H를 통해 BG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1,460,000원(= 141,460,000원 - 7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에 불과하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8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 등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순번 18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 등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19	108,511,754	2020-01-13	피고 B는 2020. 1. 15. BE의 계좌로 65,000,000원, 2020. 1. 17. J의 계좌로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9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 등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순번 19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 등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16	55,600,000	2019-12-13	피고 B는 2019. 12. 5. BE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에게 BF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금액 19,470,407원, 배서금액 19,470,407원)을 교부하여 차용금 변제에 같음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6,129,593원(= 55,600,000원 - 30,000,000원 - 19,470,407원)에 불과하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6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순번 16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3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8,511,754원(= 108,511,754원 - 65,000,000원 - 35,000,000원)에 불과하다.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23	62,656,000	2020-01-02	피고 B는 2020. 1. 2. BE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1. 6. BG의 계좌로 20,000,000원, 2020. 1. 7.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F에게 BF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금액 27,903,004원, 배서금액 18,707,004원)을 교부하여 합계 78,707,004원(= 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18,707,00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6,051,004원(= 78,707,004원 - 62,656,000원)을 초과 변제하였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23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 등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BF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한편, F은 ① 순번 23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9. 12. 26. 'BI'을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번호 BJ, 어음금액 59,460,000원, 만기 2020. 4. 17.로 된 어음(갑 제72호증)을 발행하였고, ② 2020. 4. 17. 다시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62,000,000원, 만기 2020. 9. 17.로 된 순번 55 어음을 다시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 B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여 순번 55 어음이 지급거절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F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순번 23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 B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순번 23 어음의 만기에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4	19,500,000	2020-01-25	피고 B는 J의 계좌로 2020. 1. 28. 합계 120,000,000원, 2020. 1. 29. 합계 25,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그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24 내지 26 각 어음의 만기 무렵에 J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F은 ① 순번 24 내지 26 각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20. 1. 22.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158,466,000원(= 37,430,000원 + 30,000,000원 + 66,036,000원 + 25,000,000원), 만기

16	55,600,000	2019-12-13	피고 B는 2019. 12. 5. BE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에게 BF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금액 19,470,407원, 배서금액 19,470,407원)을 교부하여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6,129,593원(= 55,600,000원 - 30,000,000원 - 19,470,407원)에 불과하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6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순번 16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액을 변제하였다.	2020. 6. 21.로 된 순번 39 내지 42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위 만기가 도래한 직후인 2020. 6. 22. 다시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110,000,000원(= 14,047,500원 + 50,000,000원 + 45,952,500원), 만기 2020. 10. 6.로 된 순번 73 내지 75 각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③ 2020. 6. 28.에도 어음금액 합계 98,500,000원(= 78,500,000원 + 20,000,000원), 만기 2020. 10. 26.로 된 순번 76, 77 각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 B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여 순번 73 내지 77 각 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FO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순번 24 내지 26 각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 B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순번 24 내지 26 각 어음의 만기에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5	66,000,000	2020-01-25		
26	60,000,000	2020-01-25		
27	52,000,000	2020-02-22	피고 B는 J의 계좌로 2020. 2. 27. 합계 56,500,000원, 2020. 2. 28. 3,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0,000,000원(= 56,500,000원 + 3,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8,000,000원(= 60,000,000원 ~ 52,000,000원)을 초과 변제하였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27 어음의 만기 무렵에 J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F은 ① 순번 27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20. 2. 21.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139,552,000원(= 51,200,000원 + 9,392,000원 + 20,000,000원 + 58,960,000원), 만기 2020. 7. 15.로 된 순번 45 내지 48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위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20. 7. 13. 다시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129,100,000원(= 97,100,000원 + 32,000,000원), 2020. 11. 11.로 된 순번 78, 79 각 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그 발행시점에 비추어 순번 45 내지 48 각 어음 및 순번 78, 79 각 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순번 27 어음의 어음금액 상당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F은 피고 B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여 순번 78, 79 각 어음이 지급거절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F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순번 27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 B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순번 27 어음의 만기에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6	55,600,000	2019-12-13	피고 B는 2019. 12. 5. BE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에게 BF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금액 19,470,407원, 배서금액 19,470,407원)을 교부하여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6,129,593원(= 55,600,000원 - 30,000,000원 - 19,470,407원)에 불과하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6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순번 16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28	10,000,000	2020-02-26	피고 B는 J의 계좌로 2020. 2. 24. 4,000,000원, 2020. 2. 27. 합계 91,500,000원, 2020. 2. 8. 3,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F에게 BF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금액 26,156,752원, 배서금액 14,982,000원)을 교부하여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6,018,000원(= 120,000,000원 - 4,000,000원 - 91,500,000원 - 3,500,000원 - 14,982,000원)에 불과하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28, 29 각 어음의 만기 무렵에 J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BF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한편, F은 ① 순번 28, 29 각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2020. 2. 26.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71,755,000원(= 51,755,000원 + 20,000,000원), 만기 2020. 7. 24.로 된 순번 49, 50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2020. 3. 6.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49,291,000원(= 13,420,350원 + 35,870,650원), 만기 2020. 8. 4.로 된 순번 52, 53 각 어음을 추가로 발행하여 그 합계액이 121,046,000원(= 71,755,000원 + 49,291,000원)이 되었으며, ③ 순번 49, 50 각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2020. 7. 21.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95,000,000원(= 39,000,000원 + 56,000,000원), 만기 2020. 11. 20.로 된 순번 80, 81각 어음을 다시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 B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여 순번 52, 53, 80, 81 각 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F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순번 28, 29 각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 B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순번 28, 29 각 어음의 만기에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9	110,000,000	2020-02-26		
31	52,800,000	2020-03-31	피고 B는 J의 계좌로 2020. 3. 6. 10,000,000원, 2020. 3. 16. 15,000,000원, 2020. 3. 31.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5,000,000원(= 10,000,000원 + 15,000,000원 +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200,000원(= 55,000,000원 ~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31 어음의 만기 무렵에 J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F은 순번 31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2020. 3. 31. 어음금액 51,920,000원, 만기 2020. 7. 2.로 된 순번 51 어음과 어음금액 46,860,000원, 만기 2020. 8. 30.로 된 순번 54 어음을 각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 B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여 순번 51, 54 각 어음이 지급거절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F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순번 31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 B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순번 31 어음의 만기에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6	55,600,000	2019-12-13	피고 B는 2019. 12. 5. BE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에게 BF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금액 19,470,407원, 배서금액 19,470,407원)을 교부하여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미변제금은 6,129,593원(= 55,600,000원 - 30,000,000원 - 19,470,407원)에 불과하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순번 16 어음의 만기 무렵에 BE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순번 16 어음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만기에 BE의 계좌로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52,800,000원)을 초과 변제하였다.	
32	119,680,000	2020-04-28	피고 B는 J의 계좌로 2020. 4. 28. 20,000,000원, 2020. 4. 29. 49,700,000원, 2020. 5. 8. 합계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20. 5. 4. BK, 피고 C을 통해 의 계좌로 합계 20,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합계 135,200,000원(= 20,000,000원 + 49,700,000원 + 45,000,000원 + 20,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5,520,000원(= 135,200,000원 - 119,680,000원)을 초과 변제하였다.	[배척]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 등이 순번 32 어음의 만기 무렵에 J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F은 ① 순번 32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2020. 4. 28.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55,000,000원, 만기 2020. 9. 28.로 된 순번 58 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그 전후에 걸쳐 2020. 4. 17. 순번 57 어음(어음금액 65,000,000원), 2020. 5. 8. 순번 59 어음(어음금액 79,600,000)을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고 B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여 순번 57 내지 59 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F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순번 32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 B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불이 타당하므로, 순번 32 어음의 만기에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양수금 6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순번 22 내지 32 각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8)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양수금 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매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B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시가가 520,000,000원 내지 530,000,000원 수준이었고, 2021. 5. 3. 위 시가가 897,000,000원까지 상승하였다. 물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의 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채권최고액인 499,200,000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나) 피고 C은 2020. 7.경까지 어머니인 BL을 통해 피고 B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 C은 피고 B의 사업내용이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F이 2019. 12. 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음으로써 피고 B에게 629,2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0. 4. 21. F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고, F이 2020. 8. 7.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B는 2020. 8. 19.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존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63, 64, 74호증, 을나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2. 9. 당시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540,000,000원9)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3. 무렵 시가가 89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나 제6호증
2	김해시 BM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BN 도로	1,750,000,000원 이상10) 시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750,000,000원보다는 고액일 것으로 보인다.	갑 제63, 64호증	
3	(차량번호 1 생략) 등 차량 6대	미상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3면	
합계	2,290,000,000원 이상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629,200,000원	앞서 인정한 사실
2	M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20,179,103원1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갑 제6호증)상 채권최고액은 합계 499,2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나, 최대한 원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M저축은행이 2021.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420,179,103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갑 제6, 74호증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750,000,000원1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갑 제63호증)에 나타나	갑 제63, 64호증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540,000,000원9)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3. 무렵 시가가 89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나 제6호증
	(적극재산 순번 2 관련)	있는 채권최고액 외에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4	피고 C 및 BL에 대한 차용금채무	합계 228,500,000원	피고 C의 자인, 을나 제3, 4호증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채무	387,070원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3면	
6	기타 채무	미상13) F이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순번 52 내지 81 각 어음 역시 유통어음으로 보이는데, 그 어음금액 합계 1,123,805,000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629,2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피고 B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 외에도 별개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 소유인 김해시 BM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압류 등 기입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아 피고 B는 'E'와 관련하여 다수의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63호증	
합계	3,028,266,173원 (적극재산 738,266,173원14) (차량번호 1 생략) 등 차량 6대의 시가, 김해시 BM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BN 도로의 시가, 실제 피담보채무액 등을 확인하더라도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과)			

3) 사해의사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7억 원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 B 역시 자신의 재산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주요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 B는 F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8. 19.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④ 피고 B는 2020. 8. 10. BL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20. 8. 11. BL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20. 8. 20.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곧바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 처분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실제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물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C은 BL에게 각종 금전관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BL은 2019년부터 피고 B와 지속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사업내용, 재산상황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 또는 BL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피고 B가 M저축은행에 대하여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

C은 2020. 8. 1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고, 다음 날인 2020. 8. 2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았는데, 이처럼 1, 2일 사이에 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등기이전 등이 전부 완료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5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우석

판사전유상

판사김혜림

별지

1) I은 본래 G의 대표이사였으나, 2020. 9. 29.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대구지방법원 2020회합131)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F은 2019. 12. 9.까지 피고 B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어음금액 합계 786,612,000원을 대여한 후 296,500,000원을 변제받아 490,112,000원(= 786,612,000원 - 296,500,000원)이 미변제 상태로 있었는데, 차후 피고 B에게 158,273,500원(순번 33, 34 기재 각 어음)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하고 대여금 합계 648,385,500원(= 490,112,000원 + 158,273,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액을 629,2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22. 4. 29.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부터 본문과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초기에는 구체적인 작성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3) 이 사건 차용증에 언급되어 있는 '각 어음'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원고	O	O	X	O	O
피고 B	O	X	O	O	X

4) 증인 H은 'F은 G에게도 유통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I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H이 I 대신 G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G가 피고 B 등에게 유통어음을 다시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5) 나아가 '표 3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내역' 중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의 소계 607,636,000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 629,200,000원에 가까운 액수이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2 정리표의 순번 22 기재 어음의 미변제금 21,976,000원을 더할 경우 위 차용금액에 더욱 근접하게 됨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달리 F이 'G 등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피고 B에게 배서·양도된 어음'을 포함할 경우 어음금액 합계가 1,077,607,754원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있다.

6) 원고는 어음 발행으로 인한 개별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7) 피고 B가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8) F은 기존 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차용증 제2조 제4항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면제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주장·증명이 없다.

9)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3. 무렵 시가가 89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 시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750,000,000원보다는 고액일 것으로 보인다.

1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갑 제6호증)상 채권최고액은 합계 499,2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나, 최대한 원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M저축은행이 2021.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420,179,103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1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갑 제63호증)에 나타나 있는 채권최고액 외에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13) F이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순번 52 내지 81 각 어음 역시 유통어음으로 보이는데, 그 어음금액 합계 1,123,805,000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629,2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피고 B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 외에도 별개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 소유인 김해시 BM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압류 등 기입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아 피고 B는 'E'와 관련하여 다수의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 (차량번호 1 생략) 등 차량 6대의 시가, 김해시 BM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BN 도로의 시가, 실제 피담보채무액 등을 확인하더라도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